

BEST HAM 선발규정

제 1 조 (명 칭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(이하 “연맹”이라 한다) BEST HAM 선발 규정이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일년간을 통하여 가장 활발한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한 아마추어무선사를 찾아 BEST HAM으로 선발, 표창함으로써 햄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, 아마추어무선의 활성화를 기하며 한국 아마추어무선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3 조 (선발인원) 매년 1명을 선발한다.

제 4 조 (선발기간)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 자료들을 익년 2월 말일까지 연맹에 제출한다.

제 5 조 (선발기준) 본 연맹 회원으로서 연간 100일 이상 아마추어국을 운용 및 연간 1,000국 이상 국내외의 아마추어국과 교신하고 아마추어무선 활동을 활발하게 한 자로서 제6조의 기준에 충족한 자중 최다득점자를 선발한다.

제 6 조 (심사기준) 심사기준은 총점 1,500점으로 하여 그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신일수 : 100일까지 100점
100일 초과 1일당 1점 (300점한도)
2. 교신국수 : 1,000국까지 100점
1,000국 초과 10국당 1점
(300점한도)
3. Award : 연맹 발행 Award 1건당 10점
기타 단체 발행 5점 (200점한도)
4. Contest : 연맹 주최 10점
기타 단체 주최 5점 (200점한도)
(20국 이상 교신에 한해서 참가한 것으로 인정)
5. DXCC : ARRL 제정 DXCC ENTITY 당 각 1점 (300점한도)
6. 국내외 각종대회 참가 (ARDF, HST, Pediton 등) : 국제대회 참가 10점
국내대회 참가 5점
입상자는 가산점 10점 (100점한도)
7. 기타활동 : 아마추어 활동에 의한 연맹에의 기여도 50점

8. 기타 : Log Book 작성, QSL 카드 발행 등 50점

제 7 조 (제출서류) BEST HAM 신청시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발신청서(연맹양식) 1부.
2. 아마추어국 허가증 사본 1부.
3. 자국 QSL 카드 2매
4. Log Book(원본) 1년분 (선발대상자에 한함)
5. 필요에 따라 Award 등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8 조 (심사위원) 심사위원은 담당부이사장, Award 담당이사, 전년도 Best Ham으로 구성한다.

제 9 조 (표 창) 선정된 Best Ham은 이사회 승인 후 정기총회에서 표창한다.

제 10 조 시상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. (1998년 2월 3일 이사회 의결 시행)

제 2 조 (준 칙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.

제 3 조 (개 정) ① 2004. 5. 22.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1조, 제12조 개정과 제목의 편수 삭제 및 부칙 조문 개정